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차령제도는 사용연한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운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주행거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차령을 달리 규정하게 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 도입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00시부터 04시까지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심야 택시운행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심야 출·퇴근 편의를 제고를 통해 심야 택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밤샘주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안 제33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

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산정 특례규정 개선(안 별표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처분 예외규정 신설(안 별표 3 및 별표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동일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밤샘주차 허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1년”을 “1년(단,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2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 중 “평균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의 차이”를 “평균운행거리”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6호마목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동일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	--	--	--	--	--	--	--	--	--

별표 5 제1호의 표에 제3호마목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동일한 택시운송사업용 자																			
---------------------------------------	--	--	--	--	--	--	--	--	--	--	--	--	--	--	--	--	--	--	--

동차를 2일 이상 운행하 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	--	--	--	--	--	--	--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 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 는 <u>1년</u> ,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 동차는 3년으로 한다.	④ ----- ----- ----- -- <u>1년(단, 택시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승용자동차는 2년)</u> ---- -----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4756